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  
(행정지원과)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4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5년 11월  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변화하는 행정서비스 및 정책 환경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 중심 조직 운영을 위해 일부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한시기구 운영 종료에 따른 내용 반영(안 제2조)

○ ‘단장’ 직위 및 ‘단’ 기구명 삭제

나. 한시기구 조항(현행 제5조) 삭제

다. 부서 신설에 따른 기구 반영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제13조(시·군·구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~ ④ (생략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1) 비용추계 등 자료 : 붙임 참조

2) 입법예고 : 2025. 10. 16. ~ 2025. 11. 21.

3) 입법예고 결과 : 별도의견 없음

4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 대상
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 대상
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 대상
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평가제외 대상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국장, 담당관·단장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 등)” 을 “(국장, 담당관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담당관·단장·과장” 을 “담당관·과장” 으로 하고, “담당관·단·과” 를 “담당관·과” 로 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주거정비과” 를 “주거정비과, 신속도시정비과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국장, 담당관·단장·과장 등  <u>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 등)</u> ①</p> <p>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“구”라고 한다) 본청 국장의 직급, 본청 및 보건소의 <u>담당관·단장·과장</u>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과 <u>담당관·단·과</u>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한시기구) 부구청장 밑에 <u>한시기구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을 둔다.</u></p>	<p>제2조(국장, 담당관·과장 등 보조·<u>보좌기관의 직급 등)</u> ① -----  -----  -----  ----- <u>담당관·과장</u> ----- <u>담당</u>  <u>관·과</u>-----  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
<p>제7조(도시관리국에 두는 과) ①</p> <p>도시관리국에 주택정책과, <u>주거정비과</u>, 도시계획과, 건축과, 공원녹지과를 둔다.</p>	<p>제7조(도시관리국에 두는 과) ①</p> <p>----- <u>주거정비과</u>, <u>신속도시정비과</u>-----  -----.</p>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개정안으로 행정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비용 발생 요인이 없음으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』 제11조제2항제1호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#### 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.

#### 4. 작성자

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장 정창섭